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법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 준수, 지정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9항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 국내대리인 미지정·부적절 지정, 관리·감독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안 제48조).

II. 검토의견

1.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국내 이용자의 피해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을 추가하고 있는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¹⁾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²⁾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하여 원인 및 피해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³⁾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분쟁·불만을 접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

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 것, 분쟁·불만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 진행경과 고지 및 10영업일 내 처리방안 고지) 하고 있는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된 게임배급업자가 플랫폼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⁴⁾ 동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게 되어 중복 규제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주서본에 반영하였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 -----. 7의2.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 -----. 7의2. ----- -----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물에 고지할 것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 4) 예를 들어, 국내: 넥서스(원스토어), 스마일게이트(스토브) / 해외: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밸브(스팀), 에픽게임즈(에픽게임즈 스토어), 닌텐도·소니·MS(콘솔 내 스토어) 등

		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